

「2026년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소상공인 모집공고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전문 광고·마케팅 대행사와 함께 프리미엄 브랜드로 집중 육성하는 「2026년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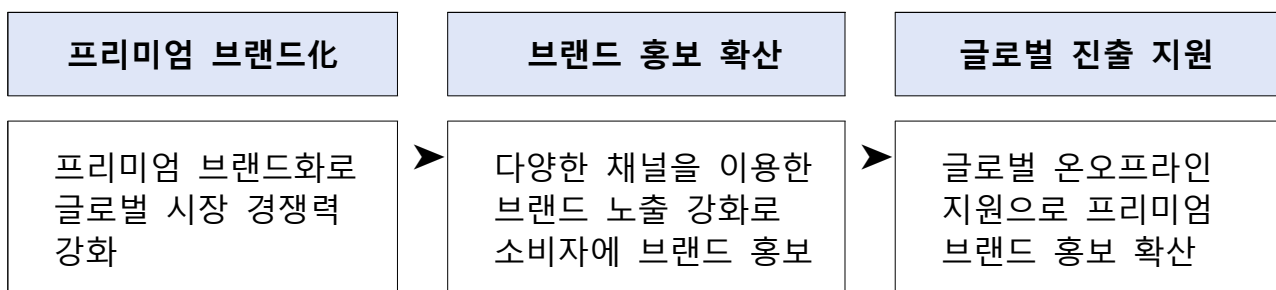
- (사업 목적)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26, 시범)으로,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중심 소상공인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프리미엄 브랜드로 단계별 육성 지원

* 1단계 프리미엄 브랜드화 → 2단계 브랜드 홍보 확산 → 3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모집 규모) 30개사 내외

- (자부담) 300만원

- (지원 내용) 전문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개별 역량 진단 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단계별 지원



2

세부 지원내용

단계별 세부지원 내용은 민간 수행기관이 소상공인 개별 역량 진단 후, 민간의 자율성과 강점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맞춤형 지원

1단계 프리미엄 브랜드화

◇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프리미엄 브랜드화'

○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 내용
브랜드 컨설팅	○ 시장조사 및 경쟁사 분석 등 브랜드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 정체성과 가치 정립
패키지 지원	○ 브랜드 로고, 디자인, 슬로건 및 상품 디자인 등 개선 지원
브랜드 스토리	○ 상품 기획, 브랜드 개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 설계 및 기존 브랜드 스토리 보완

2단계 브랜드 홍보 확산

◇ 브랜드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미디어 광고 등 전략적 홍보 지원

○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 내용
콘텐츠 제작	○ 유튜브, OTT 광고 등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미디어 광고	○ 유튜브, OTT 채널 등 미디어 광고 지원
셀럽·인플루언서 광고	○ 셀럽,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PPL 광고

3단계 글로벌 진출 지원

◇ 글로벌 K-컬처 행사 연계나 글로벌 온라인 진출 등 글로벌 인지도 확산

○ 지원내용(예시)

구 분	지원 내용
글로벌 인플루언서 홍보	○ K-컬처 관심도가 높은 국가의 현지 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 추진
글로벌 행사 연계	○ 글로벌 K-컬처 행사 또는 해외 행사와 연계한 글로벌 홍보

3

신청 자격

□ (자격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①정상 영업 중이며, ②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구 분	내 용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참고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이 휴·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4

사업 신청 · 접수

□ (신청 방법)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

< 판판대로(fanfandaero.kr) 사업신청 절차 >

① 판판대로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 사업 신청 → ⑤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 (신청 기간) '26년 5월 11일(월) ~ 5월 29일(금) 18시까지
- (제출 서류) 신청 시, 판판대로 누리집 내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필수	1	사업자등록증	시스템 자료 연계로 제출 가능 * 연계 제출 불가시 판판대로내 직접 첨부하여 제출
	2	소상공인확인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택	4	자사 브랜드 상표등록증	판판대로내 제출
	5	자사물 또는 홈페이지 URL	판판대로내 URL 작성
	6	자사 SNS 채널	판판대로내 채널 주소 작성
	7	기업(브랜드) 소개서	판판대로내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신청 소상공인 사업자번호(또는 대표자)로 등록된 상표등록증 등으로 확인

** 타기업·소상공인의 브랜드 제품을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지원대상 선정

- (서류평가) 적격 여부* 중심으로 선정대비 최대 2배수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소상공인 여부, 지원대상 제외 여부 등 사업 신청 자격요건 충족 확인

** ①자사 브랜드 상표권 보유, ②자사물/홈페이지 보유, ③자사 SNS 채널 보유, ④회사(브랜드) 소개서 보유 여부 평가

- (가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해당 대상
5점	• 2025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3단계 진출 소상공인
2점	• 2025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 2025년 강한 소상공인 파이널오디션(2차 사업화지원) 진출 소상공인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발표평가) 민간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 평가 등 주대표자 참석 필수(세부내용은 대상자별 별도 안내)

6

문의처

□ (전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소상공인지원 통합콜센터	1899-0309

7

기타사항

- (부당개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주의

- 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허위 대출 약속, 부당 보험영업 행위, 정부기관 사칭, 대출 심사 허위 대응, 계약 불이행, 부정청탁 등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처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붙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 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